對外秘

차○○ 판사 시사인 칼럼 투고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

2015. 9. 22. 기획조정실

1. 검토 배경

▣ 차○○ 판사 진보성향 주간지인 시사인에 칼럼 투고

- 9월 초순경 시사인에 칼럼 투고 (총 5회 분량의 연재 칼럼 중 첫 회)
- 9. 14. ~ 9. 18. 첫 칼럼이 실린 시사인(주간지) 418호 출간
- 9. 21. 첫 칼럼이 온라인에 게시됨

2. 사건 경과

▣ 8. 7. Facebook에 상고법원 관련 글 게시

- Facebook에 상고법원 및 사실심 충실화에 대해 고민 중이라는 글 게시

(사진)

▣ 8. 11. 코트넷에 글 최초 게시 ⇨ 법률신문 인터넷판 기사화

- "사실심 충실화 관련 판사 수 대폭 증원과 상고제한 추진 의견"

▣ 8. 16. 차○○ 부장판사의 차○○ 판사 설득 ⇨ 실패

- 차○○ 부장판사(○○기, ○○○○지법, 前 사법등기국장, 차○○ 판사와 사촌관계)가 차○○ 판사 설득 시도하였으나 실패

☑ 차○○ 판사의 답변 요지

▶상고심 기능 개선의 가장 이상적인 수단은 **상고허가제**인데, **상고법원**을 도입할 경우 **상고허가제 도입이 더욱 어려워질 우려**가 있음

▶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**법관 대폭 증원을 통한 업무경감**인데, **현재 대법원이 제시한 사실심 충실화 방안**은 **법관 대폭 증원에 대한 논의가**

빠져 있으므로 미봉책에 불과함

▣ 8. 17. ~ 8. 31. 코트넷에 글 계속 게시 및 토론

- 문○○, 설○○ 부장판사 ⇨ 법관 대폭 증원론은 현실성 없다고 지적
- 차○○ 판사 ⇨ 개인적 인맥을 동원하여 기자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꾸준히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

▣ 8. 31. 시사인에서 차○○ 판사의 코트넷 게시 글 요약 보도

- 제목: "현직 판사, 5분 재판을 누가 승복합니까" (시사인, 416호)
- 진보성향의 시사인 편집팀은 상고법원에 확고한 반대 입장

☑ 시사인 8. 31.자 기사 중 사진에 대한 시사인 편집팀의 설명 부분
▶시사인 편집팀은 기사 중 사진에 대한 설명 부분에 **"대법원은 상고법원이 만들어지면 대법원이 정책법원 구실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. 사실상 '옥상옥', 4심 체제다. 전담 법원을 만들기보다 대법관 수를 늘리자는 반대의견이 나오는 이유다."**라는 문구를 의도적으로 포함시킴

▣ 9. 18. Facebook에 시사인과 법률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

- 차○○ 판사 자신의 노력이 언론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임

(사진)

▣ 9. 21. 시사인 온라인 판에 차○○ 판사 투고 칼럼 첫 회 게재

- 개인적 인맥을 동원하여 기자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꾸준히 하겠다는 다짐의 실천인 것으로 보임
- 판사들은 대체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

☑ 다음 익명카페 "이판사판 야단법석"에 게시된 글 (9. 21.)
차○○ 판사님께서 언론에 내신 글입니다. 왠지 혼자서 고군분투 하시는 것 같아 죄송하네요. 생각하는 바를 추진하고자 하는 힘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.
http://www.sisainlive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4353

3. 차○○ 판사 시사인 칼럼의 내용

▣ 전체적인 내용

- 민사단독 재판부를 맡고 있는 차○○ 판사의 1주일 생활을 서술
- **과중한 업무량**으로 **하급심의 변론(5분 변론), 증거조사, 판결문 작성이 부실해지는 상황**을 묘사
- **문제가 되는 내용**은 **칼럼의 뒷부분**에 있음

▣ 차○○ 판사 칼럼 중 문제되는 내용

- **대법원**은 이미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**사실심 심리 관여**를 많이 해왔음
- 상고법원이 법률심으로서 가진 권한을 넘어 더 충실히 사실심의 사실 판단을 깨는 월권적 행위를 해도, 사실심 판사들은 심리 강도를 높일 여유가 없음
- 법원행정처가 내놓은 사실심 충실화 대책은 상고법원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과 변호사 단체 요구로 명목상 내놓은 것으로서 별다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임
- 판사 수 대폭 증원이 해결책이나, 상당수의 법관, 특히 고위직 법관들은 판사 수 증원이 판사의 희소성을 떨어뜨려 사회 지위를 낮출 거라고 우려해 내심 반대하기도 함

> **☑ 차○○ 판사 9. 21.자 시사인 칼럼**
> "사실심인 1·2심이 사실판단 부분에서 심히 부실하니 **원래 3심은 법률심이어야 하지만 사실 판단도 검토해줘야, 1·2심의 사실심 충실화가 가능하다.**" 상고법원 찬성론 중에 이런 주장도 있다. 가능한 논리이나 현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. 판사들도 5분 재판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. 이미 상시 야근, 주말 근무로 멱에 찬 상태로 일하는 판사가 많다. **상고법원이 법률심으로서 가진 권한을 넘어 더 충실히 사실심의 사실 판단을 깨는 월권적 행위를 해도**, 사실심 판사들은 심리 강도를 높일 여유가 없다. **이미 대법원이 채증법칙 위반, 심리 미진으로 사실심 사실 판단 관여를 많이 했다.** 하지만 사실심의 소극적 증거 채택의 심리관행은

바뀌지 않고 있다.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내놓은 한국형 디스커버리(미국에서 당사자들이 주도해 서로 가진 증거자료를 현출시키는 제도) 등의 각종 사실심 충실화 대책도 결국 이 5분 재판의 벽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한다. 아니 사실 대부분 판사도 별다른 감흥이 없다. 대법원, 법원행정처도 알 것이다. **스스로 원해서 내놓은 안도 아니고, 상고법원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과 변호사 단체 요구로 명목상 내놓은 사실심 충실화 방안이 별다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리라는 것을.** 5년, 10년에 걸쳐 판사 수를 대폭(1.5~3배) 증원해, 5분 재판을 20~30분 재판으로 만들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사실심 충실화가 가능하다. 물론 나를 포함해 법관들도, 법관 수 증원과 더불어 기존 재판 모델에 안주하지 않고, 질 높은 새로운 재판 모델의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. **상당수의 법관, 특히 고위직 법관들은 판사 수 증원이 판사의 희소성을 떨어뜨려 사회 지위를 낮출 거라고 우려해 내심 반대하기도 한다.**

▣ 칼럼 중 시사인 편집팀의 편향적인 편집 의도가 보이는 부분

● 차○○ 판사의 칼럼 앞부분의 [편집자 설명] 부분, 칼럼 중간에 실린 [사진 설명] 부분에서 시사인 편집팀의 편향적인 편집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음

- '상고법원 신설'과 '판사의 업무량 감소를 통한 사실심 강화'는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, 마치 **상고법원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대법원과 일선 판사들 사이의 갈등이 존재한다는 식의 구도**로 몰아가고 있음

☑ 차○○ 판사 9. 21.자 시사인 칼럼 中 편집자 설명 부분

▶**[칼럼 앞부분]** 판사가 맡는 사건이 과중하다는 데는 다수가 동의한다. 갈리는 건 해법에서다. **대법원은 3심을 다루는 상고법원을 따로 만들자고 주장한다. 현장에서는 사실심을 강화해 항소·상고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. 상고법원을 설치하느냐 마느냐의 양자택일로 끝낼 문제는 아니다.** 모처럼 법원 개혁이 이슈가 된 만큼, 핵심 과제가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개혁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. 재판을 제대로 받을 권리는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공익적 사안이다.

▶**[사진1 설명] 대법원은 3심을 다루는 상고법원을 따로 만들자고 하고, 현장 판사들은 사실심을 강화해 상고를 줄이자고 주장한다.** 재판을 위해 입장하는 대법관들

▶**[사실2 설명] 이미 대법원은 사실심 사실 판단에 관여를 많이 해왔다.** 위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

4. 분석

1 부적절한 행동이나, 법관윤리강령 등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

● 칼럼 중 부적절한 내용 ⇨ 법관윤리강령 등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

① "상고법원이 **사실심의 사실 판단을 깨는 월권적 행위**를 할 가능성 존재"

② "법원행정처가 내놓은 **사실심 충실화 대책**은 **상고법원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과 변호사 단체 요구로 명목상 내놓은 것**"

③ "**고위직 법관들**은 **판사 수 증원**이 판사의 희소성을 떨어뜨려 사회 지위를 낮출 거라고 우려해 **내심 반대**하기도 함"

● 법관윤리강령

☑ 법관윤리강령

▶**제2조 (품위 유지)** 법관은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한다.

▶**제3조 (공정성 및 청렴성)** ① 법관은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,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.

▶**제5조 (법관의 직무외 활동)**

① 법관은 품위 유지와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, 학술 활동에 참여하거나 종교·문화단체에 가입하는 등 직무외 활동을 할 수 있다.

▶**제7조 (정치적 중립)**

① 법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.

② 법관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임원이나 구성원이 되지 아니하며, 선거운동등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.

●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7호 "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"

☑ "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"(권고의견 제7호)

법관은 SNS 상에서 **사회적 · 정치적 쟁점에 대하여 의견 표명**을 하는 경우에도 **자기절제와 균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**해야 하고, **법관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거나 향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**해야 합니다.

2 차○○ 판사의 열정을 시사인 편집팀이 악용하고 있는 상황

- 진보성향 주간지 시사인의 편집팀 ⇨ 한겨레, 경향 등 진보언론 및 민변 등과 동일하게 **상고법원 반대 입장**

> ▶현재의 대법원을 **보수화된 대법원**이라고 규정
> ▶**상고법원의 내용 그 자체만으로 찬성, 반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음**
> ▶상고법원 도입은 자신들이 **보수화된 대법원이라고 규정한 현재의 대법원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**이기 때문에 협조할 수 없음 ⇨ **상고법원 반대**

- 차○○ 판사의 **주된 관심**은 **"법관 증원을 통한 하급심 충실화"**이고, 상고법원 반대는 부수적인 관심사임

- 그러나 시사인 편집팀은 차○○ 판사의 글을 **"상고법원 도입을 둘러싸고 대법원과 일선 판사들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"라는 주장**을 부각시키기 위한 도구로 활용 ⇨ 이와 같은 의도는 **"편집자의 설명"이나, "사진 설명"에서 명확하게 드러남**

3 차○○ 판사의 언론 활동과 문제제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임

- [논거①] 차○○ 판사는 자신의 계속된 문제제기로 인하여 **의제를 설정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**를 하고 있음

> ☑ **차○○ 판사가 자신의 Facebook에 쓴 댓글 (9. 19.)**
> ▶내가 글 올리고 나서 나눈 많은 대화 중 현실성이 없다는 반론 외에 제대로 된 논박을 경험하지 못했는데… **내가 글을 올린 후에 나온 법원 행정처 인사제도 개편안에 현재 업무 부담하에서 적정판사수에 대한 용역연구를 내년 1월에 시작한다는 내용**이 보인다. **그 진정성은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의제로 만드는데는 성공한듯 하다.** 그리고 난 직접 내가 현실성있게 만드는 노력을 해 보는 쪽으로 마음을 정하고 간다. 한 5년 10년 후에 결과를 봐야겠지. 지켜봐주면 좋을 듯. 함께 해 주면 더 좋고. 그리고 그게 **맞는 방향이라면 판사라면 맞다고 말하고 그길을 가는게 나는 정도라고 본다.**

- [논거②] 차○○ 판사의 **대학, 사법연수원 시절 활동 경력**에 비추어 보면 **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에 대한 끈질긴 추진력**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음

- 서울대 법대 96학번인 차○○ 판사는 **법대 학생회, 법대 동아리에서 활동한 사실이 없었지만,** 서울대 도서관에서 **고시공부를 하던 중**에도 **학내 성폭력 문제 등의 사안에 대하여 장문의 대자보를 쓰면서 논쟁**을 하는 활동을 함 ⇨ 非主流 활동가 성향

- 차○○ 판사는 2002년 고시공부 중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후부터 **장애인 문제 개선을 위한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**

☑ **동아일보, "시각장애인 사시 합격 도운 차○○ 씨 판사 임관 (2009. 9. 22.)**

▶ 지난해 시각장애인으로는 처음 사법시험에 합격한 최영 씨(28). 그의 아름다운 도전을 물심양면으로 도운 차○○ 씨(32·사법시험 45회·사진)가 1일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했다. 차 씨가 시각장애인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02년 11월. 1차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차 시험을 준비하던 그는 우연히 대학에서 열린 한 '장애인 영상제'를 보게 됐다. 당시 서울대는 특별전형으로 장애인 학생의 입학을 권장하고 있었지만 강의 여건이나 도로 상황 등은 여전히 불편했다. 영상제를 보고 충격을 받은 **차 씨는 친구들과 함께 법대 동아리와 장애인 관련 동아리 4곳을 모아 '서울대 장애인권연대사업팀'을 만들었다.** 그의 '장애인 사랑'은 사법연수원에 들어간 2004년 이후에도 계속됐다. 그해 2월 친구의 소개로 법대 후배인 최○ 씨를 만났고 함께 장애인사업팀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.

▶얼마 뒤 최 씨는 결국 시력을 잃었다. '법조인의 꿈'조차 위태로웠던 그에게 차 씨는 '눈'과 '발'이 돼 주었다. **사법시험 원서 신청을 돕는 것은 물론이고 법무부를에 연락해 응시 방법을 조율했다.** 최 씨가 컴퓨터로 답안을 작성하면 이를 직원이 종이에 옮겨 적어 다른 수험생과 공평한 조건으로 채점을 받는 방식을 제안했고 받아들여진 것. **최 씨가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차 씨는 사법연수원에 함께 찾아가 교수들과 최 씨의 연수원 적응을 위해 여러 방법을 마련했다.**

- 2003년에는 고시생 신분으로서 **이라크 전쟁 반대운동 동참**

☑ **문화일보, "반전운동 달아오른다" (2003. 3. 18.)**

고시생들도 이라크전 반대운동에 동참하고 나섰다. **서울대 출신 고시생으로 이뤄진 '고시생 대자보를 쓰는 모임'**은 지난 주부터 반전스티커 붙이기, 반전깃발 달기 등의 운동을 벌이고 있다. **이 모임을 주도한 차○○(27·법대 대학원)씨는 "공부시간을 빼앗기지 않고도 반전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생활 속 반전운동을 생각해냈다"고 말했다.**

5. 대응 방안

가. [총론] 전체적인 대응 방향

▣ 섣부른 개입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

- [논거①] 차○○ 판사가 시사인에 칼럼을 투고한 사실은 이미 **국제인권법연구회, 다음 익명 카페(이판사판 야단법석) 등에 공지**되어 많은 판사들이 알고 있음 ⇨ 법원행정처가 섣불리 개입할 경우 **판사들 여론의 逆風**을 맞을 우려 존재

- [논거②] 많은 법관들이 이미 **법률신문, 중앙일보, 조선일보, 매일경제신문 등에 칼럼 투고**를 하고 있음 ⇨ 문제는 칼럼 투고 자체가 아니라 **칼럼의 내용**인데, 차○○ 판사의 칼럼에 대해 섣불리 개입할 경우 **법원에 불리한 칼럼을 투고하자 법원행정처가 개입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우려 존재**

- [논거③] 차○○ 판사의 칼럼에는 **부적절한 부분**이 있기는 하나, 그 정도가 **"법관의 품위, 공정성, 자기절제, 균형잡힌 사고"를 일탈하였다고 단정할 정도는 아님** ⇨ 섣부른 개입을 할 경우 **법관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** 가능

▣ 3가지 조치 필요

① 문제 부분에 대한 안내, ② 예의 주시, ③ 일선 판사들의 오해 불식

나. [각론] 구체적 대응방안

1 문제 부분에 대한 공식 안내

- **비공식적 채널(차○○ 판사와 사촌관계인 차○○ 부장판사)을 통한 논리적 설득 전략**은 이미 사용하였으나 실패

- "차○○ 판사가 존경하는 선배"를 찾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나, 지금 상황에서는 효용이 크지 않음

- 다른 비공식 채널을 계속 가동할 경우, **법원행정처가 배후에서 계속 관여**

한다는 인상을 차○○ 판사에게 줄 우려 존재

● 비공식적 채널 ⇨ 공식 채널로 방향 전환 필요

- 공식채널인 ○○지원장(최○○, ○○기)이 차○○ 판사의 칼럼 투고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며, **문제 부분을 안내**할 필요 존재

● ○○지원장 면담 시 포함될 대화 내용

① **칼럼 투고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고 수용하는 태도 유지**해야 함

② **5회 연속 칼럼을 게재하고, 수당을 받을 경우,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**을 안내

▪ [주의사항] 유용한 정보를 안내한다는 태도 유지 해야 함

③ 칼럼 투고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, **법관윤리강령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7호의 취지를 유념하여 "법관의 품위, 공정성, 자기절제, 균형잡힌 사고"를 유지하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주의 사항**을 **격려 내지는 덕담 형식**으로 전달

④ 시사인에서 차○○ 판사의 칼럼을 게재할 때, **"편집자의 설명" 부분**과 **"사진에 대한 설명" 부분**에서 차○○ 판사의 의도와는 달리 **시사인 편집팀의 시각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**을 안내

2 예의 주시

● 사태의 추이를 지켜 보면서 위기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

● 공식채널을 통하여 문제 부분에 대한 공식 안내하는 것을 넘어서,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경우 **판사 여론의 역풍**을 맞을 우려 존재

● 차○○ 판사가 존경하는 선배, 차○○ 판사와 친한 선·후배 명단 취합·관리 필요

3 일선 판사들의 오해 불식을 위한 노력 계속 추진

● 차○○ 판사의 글이 호응을 얻는 것은 일선 판사들이 법원행정처에 갖

는 불만이 크기 때문임 ⇨ 일선 판사들이 법원행정처에 대해 갖는 불만이 크지 않다면, 차○○ 판사의 글은 조용히 사라질 것임

- **법원행정처의 공식적인 개입**은 "차○○ 판사"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, **일선 판사들의 상고법원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한 노력**으로 나타나야 함 ⇨ 각급 법원 순회 간담회, 법원행정처장님 명의의 코트넷 공지사항 게시 등 판사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을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함

- **법관 업무량 감소**에 대하여 **판사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대책** 제시 필요 <끝>